

블록체인 관련 법규제 동향

김승한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1. 머리말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에 대한 기대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열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¹⁾에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활용됨으로써 그야말로 탈중앙화(Decentralized)된 화폐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로 인하여 더욱 부각된 것은 사실이나, 비단 이 기술을 암호화폐와 동일시하거나 암호화폐에만 활용되는 것으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예로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부터 전자투표(E-Voting), 각종 인증수단 등이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이른바 ‘믿을만한 제3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또는 관리 권한 등이 중앙집중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비효율이 발생했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기술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각 정부의 규제 이슈는 과연 이 기술이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터넷의 다음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즉, 블록체인 기술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암호화폐’ 내지 ‘암호토كن’ 등에 대한 규제와 ‘ICO(Initial Coin Offering)’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공개 절차에 대한 규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암호화폐 및 ICO에 관한 주요국가 및 국내의 규제 동향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기술적 패러다임인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토대가 되는 법적 환경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암호화폐 관련 규제 동향

2.1 암호화폐 규제 총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구현되기 위한 하나의 원동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규

1) 용어와 관련하여 암호화폐(Crypto Currency),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가상통화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Crypto Currency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통용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를 번역한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제 동향은 블록체인 기술의 향후 발전상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암호화폐에 대하여 어느 나라 이든 일정수준 이상의 규제 정책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탈중앙화’라는 핵심 가치에 걸맞게 국가나 중앙기관의 감시를 피하여 불법적인 목적으로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려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는 각 국가별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입법을 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실상 거의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한 국가, 암호화폐 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 등 각 국가별 규제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또한 암호화폐 및 그 시장 자체의 변화도 매우 커 각 국가의 대응 역시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는 대체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거래 추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암호경제와 실물경제가 맞닿아있는 지점인 거래소 그리고 처음 금전이나 암호화폐 등 가치가 유입되는 과정이 ICO가 가장 규제를 시행하기 용이한 지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2.2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태도는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에서부터 규제가 거의 없는 국가까지 그 정도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가장 강한 규제를 하는 나라는 암호화폐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있다. 중국의 경우 일찌감치 2013년에 중앙은행에서 최초의 암호화

폐인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지토록 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17년 ICO 및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2018년에 들어서는 중국 IP를 사용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접속을 차단 조치한 바 있다.

러시아 역시 암호화폐에 관하여 강한 규제를 하는 국가 중 하나였다. 2016년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모집 방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등의 강력한 규제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관련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 금지하는 방향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거래소 운영과 ICO가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 역시 대체로 규제가 엄격한 국가로 분류된다.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이야기함에 있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실은 2017년 12월 세계 최대의 선물거래소인 시카고 선물거래소(CME)와 옵션거래소(CBOE)에서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선물거래를 승인하여 거래 개시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같은 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ICO를 미국 증권법 적용대상이라고 발표한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서는 2015년부터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사이버보안 등을 골자로 하는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라는 까다로운 암호화폐 사업자 규제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분류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등 규제와 자율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도를 시행하고, 인가된 거래소에 대하여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용자 재산 분리관리, 법정화폐와의 오인방지를 위한 설명의

무 부과 등 규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과거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입안에 소극적이고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2014년 있었던 최대 거래소 마운트곡스 해킹사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또한 최근인 2018년 초 코인체크 해킹사건이 발생하여 모든 인가된 거래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소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이다.

싱가포르와 영국은 대표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약한 나라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규제가 적어 많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이 싱가포르로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영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변화가 크므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활용한 암호화폐를 규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하여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통해 일부 요건을 갖출 경우 당국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위스, 에스토니아, 홍콩 등의 국가도 암호화폐 규제가 적은 나라로 알려지고 있으며, 프랑스도 비교적 약한 규제로 암호화폐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위의 국가별 동향을 보면 알다시피 규제의 정도와 방향성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암호화폐의 탈중앙적이고 국경을 넘어서 거래되는 특성상 G20, EU 등을 통하여 공동의 규제 정책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2.3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현황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 대응도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고, 대응 방향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등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책은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디지털화폐 제도화 TF’를 구성하면서 처음 논의되었다. 이 당시는 TF의 명칭과 같이 강한 규제보다는 약한 규제를 통한 양성화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있었던 정권 교체 과정으로 인하여 해당 TF는 한 차례의 회의만을 하고 추진이 되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새 정권에서는 2017년 9월에 첫 TF 회의를 가졌는데,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강력 규제 중심으로 정책이 변화하였다. 이후 2017년 9월 29일에는 ICO를 전면금지 한다는 내용의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2017년 12월에는 암호화폐를 금융 관련 법상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TF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변경하며 거래소 폐쇄 검토 등 강력한 규제 방침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 규제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의 혼선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하였으며, 암호화폐는 금지하고 블록체인은 발전을 장려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이후 암호화폐 금지의 입장 역시 다소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 이후로 명확한 입장 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과세당국이 2018년 6월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앞서 살펴본 타 국가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체로 매우 강한 규제국가로 평가할 수 있겠다. 헌데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국내 규제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사인(私人)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등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는 법률

<표 1> 암호화폐 관련 입법안 발의 현황

[2018년 5월]

제안자	발의 법률안 명	제안일자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7. 31
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2018. 2. 2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2018. 2. 6

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럼에도 정부가 발표한 기존의 거래소 폐쇄, ICO 전면금지 등의 방침은 이러한 법률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는 거래소에 들어가는 자금줄에 해당하는 은행 계좌를 막도록 하는 은행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암호화폐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본 법률의 개정안 내지는 암호화폐 관련 특별법 제정안 등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정부의 입장, 변화하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들 법안이 입법에 이르는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블록체인 관련 입법 동향

이처럼 암호화폐에 관한 세계 각국 및 국내의 규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암호화폐의 원천 기술 혹은 동작 매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해서는 규제 정책에 확연한 온도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2016년 5월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는 ‘불간섭주의(Hands-off Approach)’를 채택하고 선제적인 규제보다는 예방 차원의 모니터링을 할 것으로 결의하고 이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전달한 바 있다.

다른 국가들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눈에 띠지 않으며, 국내에서도 한창 암호화폐 강력 규제에 관한 이슈가 활발했던 지난 2017년 겨울 무렵에도 정부가 암호화폐는 규제 대상이나 블록체인은 새로운 혁신적 기술로써 발전 장려의 대상이라는 기조를 분명히 했던 바 있다. 이는 아직 기술적으로도 초기단계로써 그 발전상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보다는 관망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는 관점에서 최근 2018년 5월 2일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협회 중 하나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8년 4월에는 바른미래당 의원들 주도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경우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진흥법 성격의 법안들도 발의된 바 있다.

기존의 법령상에서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예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파기의무 준수가 어렵다는 이슈가 있다. 즉 여러 개의 블록(분산원장)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분산되어 저장되도록 구현될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파기의무 등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강화되는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관련한 이슈 역시 블록체인 도입의

숙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관하여는 대체로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여러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옴에 따라 기존의 해당 산업 관련 법령과의 충돌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뚜렷한 블록체인 기술만의 특유한 규제정책이나 이슈들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지에 관하여 관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4. 맷음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금지하되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을 장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초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각국의 규제는 정부의 정책방향,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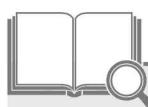
른 국가의 규제 변화,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결과 등 의 영향을 받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 이후에도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입법 추진 경과, 다른 나라의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한정미, 안수현,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Ⅰ) -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2017, 한국법제연구원
- [2] 금융위원회, 블록체인기술 금융 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2016.6
- [3] 맹수석,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2017, 상사법 연구 제35권 제4호

[주요 용어 풀이]

- 블록체인(Blockchain): 온라인 금융 거래 정보를 블록으로 연결하여 피투피(P2P) 네트워크 분산 환경에서 중앙 관리 서버가 아닌 참여자(피어, peer)들의 개인 디지털 장비에 분산·저장시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



정보통신 용어 사전

<http://terms.tta.or.kr>



유전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GA

진화의 핵심 원리인 자연 선택과 유전자의 개념을 이용한 최적화 기법.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답(solution)을 무작위로 생성한 뒤 이 해답 집단을 진화시켜 좋은 해답을 찾는다. 유전 알고리즘은 집단 기반의 최적화 기법인 진화 알고리즘의 한 종류로, 집적 회로 설계, 리보핵산(RNA: Ribonucleic acid) 구조 예측, 인공 신경망 학습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최적화 및 탐색(search) 문제에 적용되고 있다.